

1. 제정이유

국악 진흥법이 제정(2023.7.25. 법률 제19567호 / 시행 2024.7.26.)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(안 제2조)

- 1)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
- 2) 운영경비 조달계획
- 3) 교수요원, 사무 전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
- 4)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

나. 전문인력 양성기관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

- 1)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[재지정]신청서(서식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4. 05. 07. ~ 6. 17.) 예정
 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중

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국악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「국악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
2. 운영경비 조달계획
3. 교수요원, 사무 전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
4.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

[별지 제1호 서식]

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 [] 지정
[] 재지정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일
신청인	기관·단체명 (개인명)			설립형태		
	주소			홈페이지		
	대표자	성명		전화번호		
	담당자	성명		전화 유선 무선		
		직위			전자우편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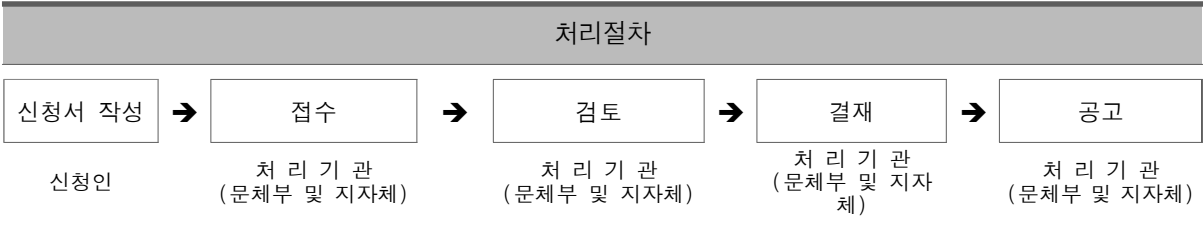
「국악진흥법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
관의 지정(재지정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. 운영경비 조달계획 3. 교수요원, 사무 전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4.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735